

♣ 지방재정공시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해설 ♣

▶ 세입이란 ?

-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.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, 공채등에 의한 수입, 재산매각수입, 사업수입, 수수료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

▶ 세출이란 ?

-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.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, 재화 및 용역의 구입,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, 고정자산 취득, 공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

▶ 일반회계란 ?

-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하며,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

▶ 특별회계란 ?

-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며, 우리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2, 기타 특별회계 9개 등 총 11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음

▶ 지방세란 ?

-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, 재산 또는 수익,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(※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,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주행세,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, 사업소세 등)

▶ 세외수입이란 ?

-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, 크게 경상적세외수입(재산임대수입, 사용료 수입, 수수료 수입, 사업수입, 징수교부금 수입, 이장수입)과 임시적세외수입(재산매각수입, 순세계 잉여금, 이월금, 부담금, 잡수입, 지난년도 수입 등)이 있음

▶ 지방교부세란 ?

-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

▶ 재정보전금이란 ?

-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%(50만 이상 시는 4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, 징수실적,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

▶ 국고보조금이란 ?

-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

▶ 도비보조금이란 ?

-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·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

▶ 지방채란 ?

-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수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며,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의 형식으로 발행

▶ 기금이란 ?

-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서 우리군에서는 2006. 12월말 기준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